

사학기관 감사증명서

1. 학교법인	①학교법인명	레마학원	②이사장 성명	윤 원 영
	③소재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7(방배동)		
	④전화번호	02-585-9611	⑤FAX	02) 582 - 6836
	⑥회계연도	(2017)회계연도 :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		
2. 설치·경영 대학교	⑦대학교명	예명대학원대학교	⑧총장 성명	이 명 범
	⑨소재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49		
	⑩전화번호	02-585-9611	⑪FAX	02) 582 - 6836
	⑫입학정원	명	⑬기타 동 법인 설치 ·경영 학교명	

3.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

구 분	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⑭감사의견 ⑮한정사항 ⑯특기사항 ⑰기타⑮⑯이외 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	<p>○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문단의 요약</p> <p>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레마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예명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</p> <p>○ -</p> <p>○ -</p> <p>○ -</p>

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-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(14.11.26)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
2018 년 4 월 30일

한 신 회 계 법 인
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선행기(인)



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원영 귀하

첨부서류 :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(별지 제3호 내지 제3의4호 서식)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(교육부 고시 제2014-55호,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),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(별지 제4호 내지 제4의5호 서식)

(별지 제4호 서식)

회계연도	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사항 집계표	학교법인명		레마학원		
		대학교명		예명대학원대학교		
확인항목		위 반 금 액 (단위 : 천원)				합계
		법인회계		학교회계		
		일반업무	수익사업	교비	부속병원	
합 계						
①	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.증여.교환.용도변경.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여부(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) [별지 제4의1호 서식]	-	-	-	-	-
②	재산 취득 시 등기.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(사학기관재무.회계규칙제44조) [별지 제4의1호 서식]	-	-	-	-	-
③	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(사학기관재무.회계규칙 제21조) [별지 제4의2호 서식]	-	-	-	-	-
④	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(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, 동법 시행령 69조의3) [별지 제4의2호 서식]	-	-	-	-	-
⑤	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(학교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)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(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, 법인세법 제62조) [별지 제4의2호 서식]	-	-	-	-	-
⑥	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여부 등 (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, 제2항 및 제8조) [별지 제4의2호 서식]	-	-	-	-	-
⑦	학교법인의 인건비.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(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) [별지 제4의3호 서식]	-	-	-	-	-
⑧	자금의 횡령.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(사학기관 재무.회계규칙 제21조) [별지 제4의3호 서식]	-	-	-	-	-
⑨	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직접 전출여부(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) [별지 제4의3호 서식]	-	-	-	-	-
⑩	이월금 구분(사고.명시.기타이월)이 적정한지 여부(사립학교법 제32조의3) [별지 제4의3호 서식]	-	-	-	-	-
⑪	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(사학기관재무.회계규칙제35조) [별지 제4의3호 서식]	-	-	-	-	-
⑫	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(CP) 매입 여부(사학기관 재무.회계규칙 제4조, 제7조 및 제33조) [별지 제4의4호 서식]	-	-	-	-	-
⑬	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[별지 제4의5호 서식]	-	-	-	-	-

(별지 제4-1호 서식)

회계연도	2017	학교법인명	레마학원	대학교명	예명대학원대학교
감사항목	위 반 내 용				위반금액 (천원)
<p>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 산을 매도.증여.교환.용 도변경.담보제공 또는 의 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관한 감사사항 여부 (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)</p>	없음				
() 건	계				
<p>② 재산 취득 시 등기.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(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4조)</p>	없음				
() 건	계				

(별지 제4-2호 서식)

회계연도	2016	학교법인명	레마학원	대학교명	예명대학원대학교	
감사항목	위 반 내 용				위반금액 (천원)	
③ 법인명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 (사학기관재무.회계규칙제21조)	없음					
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 (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, 동법 시행령 69조의3)	.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시 산출기준액 (단위:천원)					없음
	구 분	사학연금 부담금	재해보상 부담금	퇴직수당	계	
	설치학교1					
	설치학교2					
	합 계(A)				(1)	
	.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부담액 (단위:천원)					
	구 분	연금부담금	재해보상 부담금	건강보험료	계	
	설치학교1					
	설치학교2					
	합 계(B)				(2)	
(A-B)				C=(1-2))		
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(학교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)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 (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, 법인세법 제62조)	. 교비회계 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을 당해 학교에 전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 전출금인 것처럼 학교에 전출 또는 지연 전출 (없음)					
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여부 등 (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, 제2항 및 제8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<법정기준(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) 확보 여부> <법정 수익률(3.5%) 충족 여부> - 충족 <법정 부담률(80%) 준수 여부> - 충족 . 수익용 기본재산(현금)의 유용.횡령 여부 (없음) .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관리 여부 - 적정 <수익 없는 재산의 수익성 결여 사유 규명 등> .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-적정 <임대계약서 작성, 임대료 산정 등> . 수익사업회계의 타 회계와 구분 여부 - 적정 					

(별지 제4-3호 서식)

회계연도	2017	학교법인명	레마학원	대학교명	예명대학원대학교
감사항목	위반내용				위반금액 (천원)
⑦ 학교법인의 인건비·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 (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)	· 학교법인의 직원 인건비·일반 경상운영비(시설비, 자산취득비 포함)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내용 (없음)				
⑧ 공금의 횡령·유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여부 (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 21조)	· 법인일반업무회계 - 없음 · 법인수익사업회계 - 없음 · 교비회계 - 없음 · 부속병원회계(다른회계로 “부당”전출 또는 대여금 포함) (없음) - 해당없음				
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여부 (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)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(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)	·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명세서(회계연도 기간중 발생분 전부해당, 즉 되돌려 놓은 경우 <회수분>도 포함) - 없음 ·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대여한 명세서(회계연도 기간중 발생분 전부해당, 즉 되돌려 놓은 경우 <회수분>도 포함) - 없음 ·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포함 - 없음 · 임상교원에 대한 부속병원의 인건비 부담금을 대학으로 전출하면서 교비회계로 직접 전출하지 않고 법인의 일반회계를 경유하여 전출한 내용 - 없음				
⑩ 이월금 구분(사교명 시·기타이월)이 적정한지 여부 (사립학교법 제32조의3)	· 법인일반업무회계 - 적정 · 교비회계 - 적정				
⑪ 시설 공사 및 구매계약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(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 35조)	· 법인일반업무회계 - 적정 · 법인수익사업회계 - 적정 · 교비회계 - 적정 · 부속병원회계 - 해당없음				

(별지 제4-4호 서식)

회계연도		⑫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(CP) 매입 명세서 (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조, 제7조 및 제33조)				학교법인명	레마학원	
2016						대학교명	예명대학원대학교	
구 분	중개 회사명	구입기간 (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)	총매입 회수	총매입액 (천원)	부도/대손처리액		비 고	
					매수	금액(천원)		
법인일반 업무회계		...부터 ...까지					해당없음	
	수익사업 회계							
		계						
교비 회계		...부터 ...까지						
	부속병원 회계							
		계						
합계								
.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:								
※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								

(별지 제4-5호 서식)

회계연도	㉓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	학교법인명	
		대학교명	
요청한 세부사항	감사인의 보고 내용	위반금액 (천원)	비 고
	해당없음		
() 건	계		
<p>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:</p> <p>※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</p>			